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 · 공제상품안내



방위산업공제조합
Korea Defense Guarantee Cooperative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17, 6층(다동, 동아빌딩)
Tel : 02-2197-7600 Fax : 02) 2197-7690
www.kdgc.or.kr



방위산업공제조합
Korea Defense Guarantee Cooperative

함께 꿈꾸는 미래 같이 만들어가는 오늘

신뢰의 울타리안에 조합원과 미래의 가치를 꿈꾸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오늘을 이끌어갑니다.

조합원에게
이익잉여금 배당

공제상품 가입시
이행보증료
우대할인율 적용

보증과 공제
ONE STOP SERVICE

국방예산절감 및
방위산업에 대한
재투자

신뢰로 방위산업발전을 뒷받침합니다

방산관련 계약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합니다.

보증
사업

공제
사업

조합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위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Korea Defense Guarantee Cooperative

CONTENTS

04	인사말
05	연혁
06	조직구성
07	보증사업
09	공제사업

방위산업 보증 · 공제 파트너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1년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더불어
조합원의 제조 · 생산 시설에 대한 각종 공제사업 시행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렴한 수수료로 국방예산 절감과 조합원의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을 할 것이고,
방위산업 전문 공제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 이 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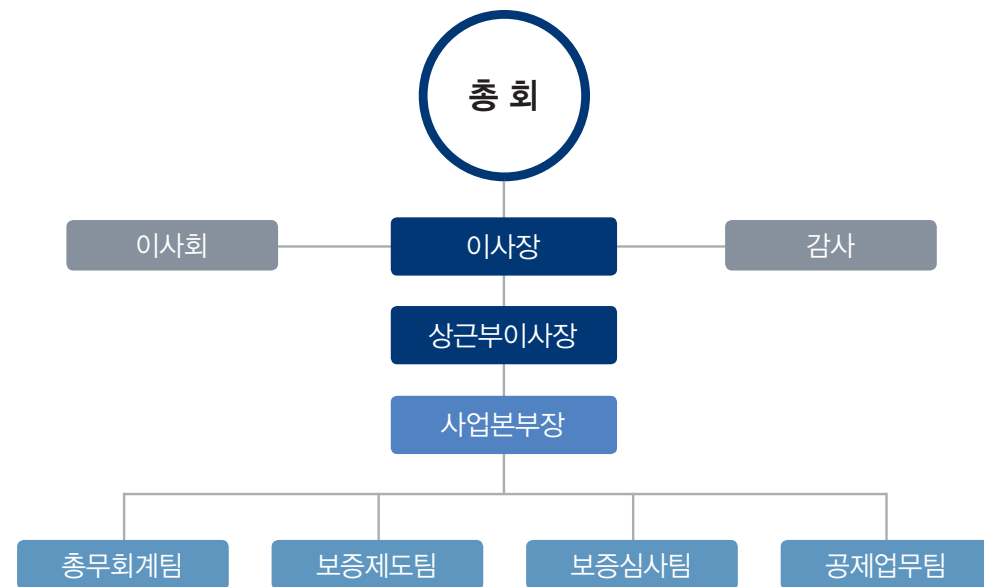
역
사

Since 1990

- 1990. 06월 방산업체 보증시행(한국방위산업진흥회)
- 1999. 03월 방산업체 보증기금 설치 · 운영
- 2007. 05월 보증금액(누적) 10조원 달성
- 10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보증기관 지정
- 2008. 03월 군수품 보증 시행
- 2011. 03월 지체상금 및 기성대가 지급보증 시행
- 06월 보증금액(누적) 20조원 달성
- 2012. 02월 보증기금 1,000억원 조성 (방산업체)
- 2013. 02월 방산관련업체 보증기금 설치 · 운영
- 2017. 08월 보증금액(누적) 50조원 달성(방산업체)
- 보증기금 450억원 조성(방산관련업체)
- 2020. 0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2021. 02월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
- 05월 발기인대회/창립총회 개최
- 06월 공제조합 설립등기
- 07월 공제조합 업무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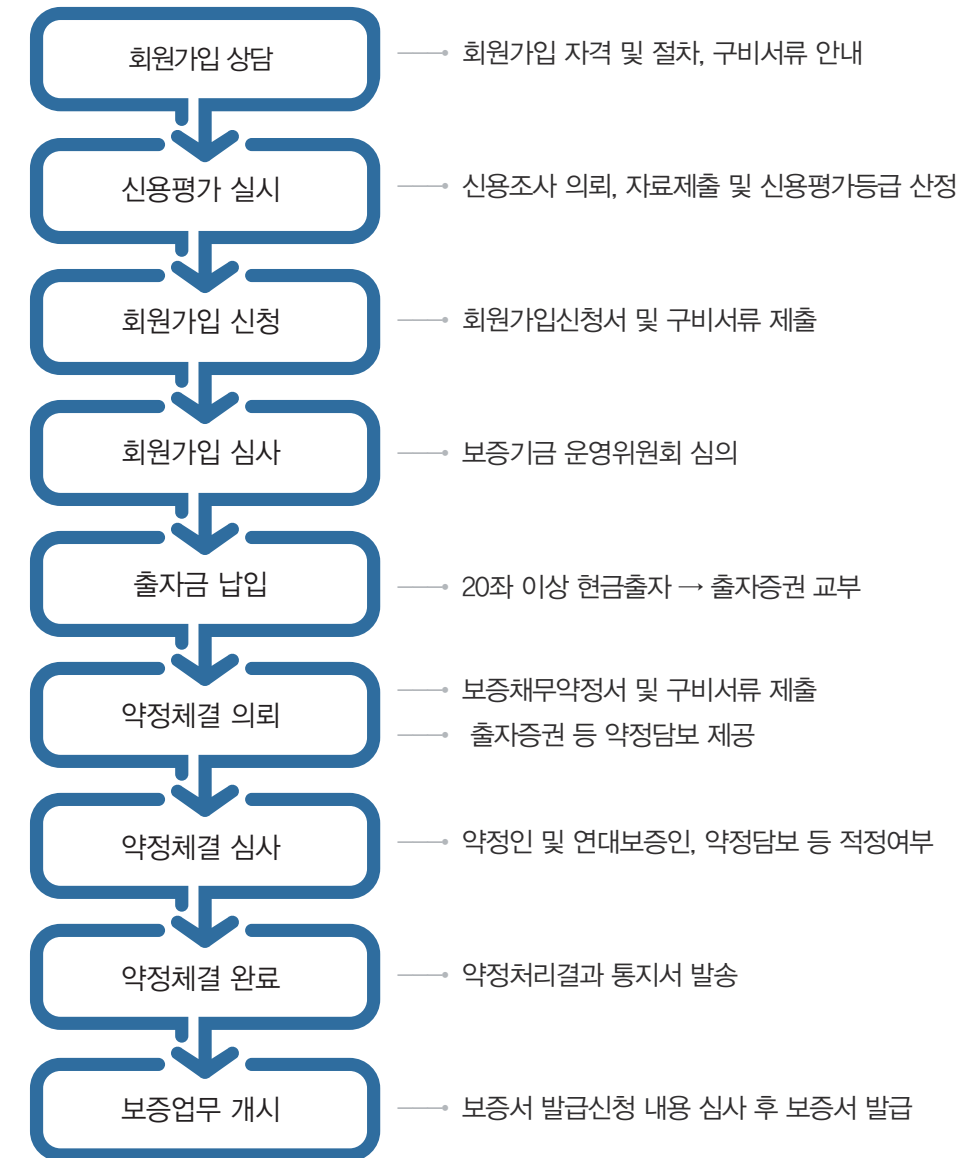
조직구성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직을 소개합니다.



보증사업

보증업무절차



※ 회원가입 담당자 : 남기범 대리(02-2197-7623)

보증대상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
-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연구 개발 또는 시제품

보증배수

- 조합원의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출자금액의 최대 130배 이내에서 보증이용 가능

보증종류

보증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입찰참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계약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지급 보증	선금금 (선금 또는 착 · 중도금)*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선금금(선금 또는 착 · 중도금)의 반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기성대가	보증계약자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이행 진도를 확인받은 후 수령한 기성대가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지체상금 *	보증계약자가 최종 계약 종료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지체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유보금	보증계약자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계약품목을 납품 완료하고 원가 정산확정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수령한 유보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납품 후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관급품위험보증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제공된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착 · 중도금 및 지체상금 지급보증은 방산업체 조합원에 대해서만 시행

공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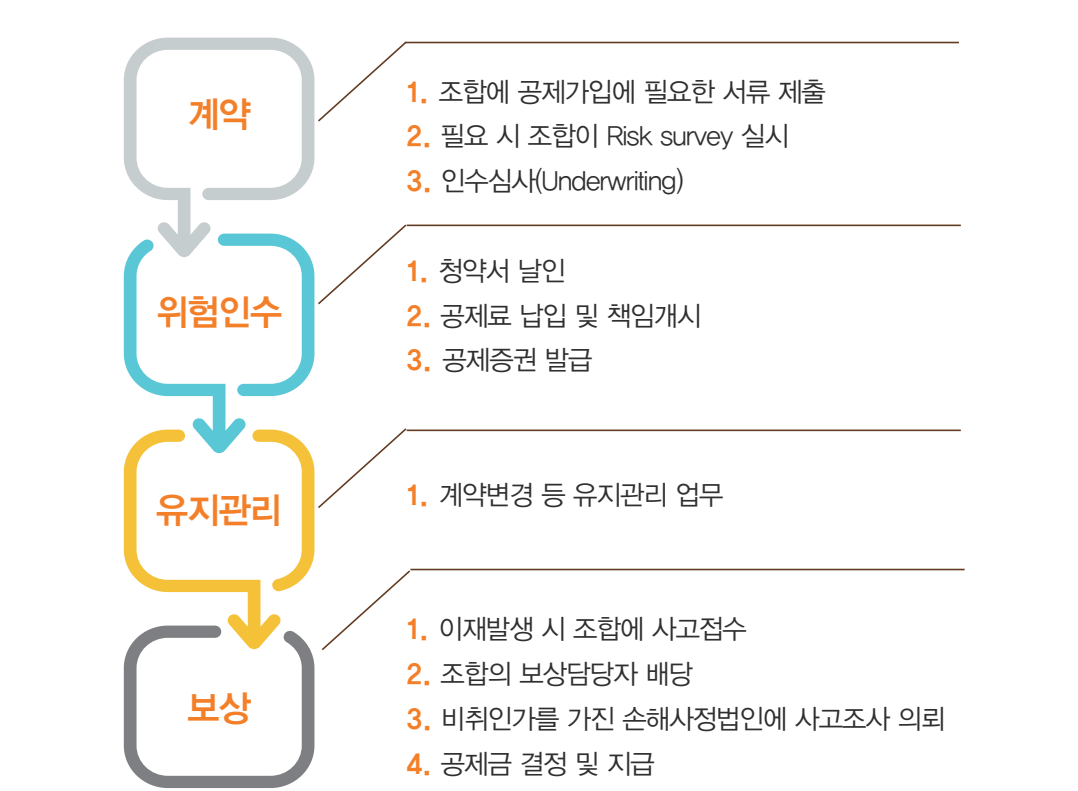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 · 생산 ·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
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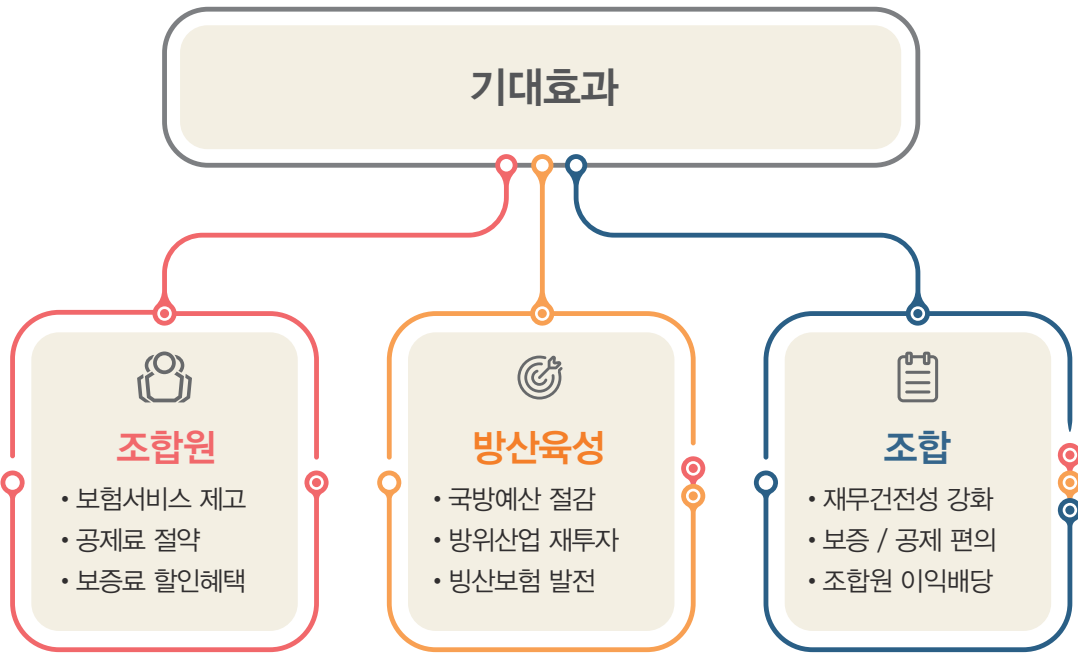
구 분	판매상품	내 용
재물 공제	재산종합	하나의 증권으로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종합패키지 보험으로 주요 보험가입대상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동산, 고정비 또는 이익상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화재	조합원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건설공사	건축 및 토목 공사현장에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공사목적물, 자재, 중장비,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보상
	조립	사업장 전체의 조립 공사 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사고 발생으로 공사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해상 공제	동산종합	조합원의 동산에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도난따위로 입은 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선박건조	선박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기간에 화재, 홍수, 전복 등의 육상 위험과 침몰, 좌초, 충돌 따위의 해상사고시발생한 손해를 보상
	운송	조합원이 육로, 호수, 강, 항만 등에서 화물이나 여객 등을 운송할 때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
	적하	해상 또는 항공을 통하여 화물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
배상 책임제	항공	항공기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항공기 자체의 직접손해, 항공화물에 대한손해,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상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
	영업배상 책임 (CGL)	조합원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법률상의배상책임을 보상
	생산물배상 책임(PL)	조합원이 제조판매한 생산물이 품질이나 기타의 결함으로 공제기간 중에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

공제계약 절차



보험(공제)종목별 취급여부

보험종목	A보험협회	B보험협회	방위산업공제조합
재물보험군	○	×	○
해상보험군	×	○	○
배상책임보험군	×	×	○



공제업무팀

담당	이름	전화번호	E-mail
팀장	이경식	02-2197-7640	lks@kdgc.or.kr
해상공제	양찬술	02-2197-7642	ygs@kdgc.or.kr
재물·배상공제	이민구	02-2197-7643	min92@kdgc.or.kr
계약관리·시스템	이연진	02-2197-7644	yjl@kdgc.or.kr
계약관리	황찬욱	02-2197-7641	hwangcw@kdgc.or.kr